# 2016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지방재정제도 변경사항

- 2016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 주요 개선사항
- 기금관련 개선사항
- 주요 지방재정제도 설명
  - 의무지출 및 재량지출
  - 출납폐쇄기한 단축에 따른 예산집행 지침

# 2016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 주요개선사항

# 1. 「지방재정법」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반영

#### □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 기준

- 법 제5조 개정으로 2016회계연도부터 예산의 '성과계획서' 작성 의무화
- 예산안에 대한 '성과계획서'를 작성. 예산 첨부서류로 의회에 제출

### □ 출납폐쇄기한 단축에 따라 사고이월 시기 조정

- 2015회계연도부터 출납폐쇄기한 단축 (익년도 2. 28. ⇒ 당해 12. 31.)
- 출납폐쇄기한 단축에 따라 사고이월 요구 및 확정시기가 앞당겨짐

구분	명시이월	사고이월	계속비 이월	
요구시기	회계연도 완료 후 10일이내	회계연도 완료 후 40일이내	회계연도 완료 후 10일이내	
확정시기	회계연도 완료 후 30일이내	회계연도 완료 후 60일이내	회계연도 완료 후 30일이내	

 $\hat{\Gamma}$ 

구분	명시이월	사고이월	계속비 이월
요구시기	회계연도 완료 후 10일이내	회계연도 완료 후 10일이내	회계연도 완료 후 10일이내
확정시기	회계연도 완료 후 30일이내	회계연도 완료 후 <u>30일</u> 이내	회계연도 완료 후 30일이내

<sup>※ &#</sup>x27;15년 예산 중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의 경우 가급적 일괄 명시이월 조치

#### □ 예산의 첨부서류 변경사항 적용

- 법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 첨부서류 중 일부 항목이 추가되는 등 편제 개편
- 재정운용상황개요서, 의무·재량지출 비중, 통합·우발 부채, 지역통합재정 통계, 회계와 기금 간 이전관련 서류 등 새로 추가
  - □ 기준 14개 항목 ⇒ 20개 38개 항목으로 증가

현 행	개 정
1.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	1. 재정운용상황개요서
2. 세입·세출예산 사업명세서	1-1.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재정지표
3. 채무부담행위 설명서	1-1-1. 재정자립도
4. 명시이월비 설명서	1-1-2. 재정자주도
5. 전전년도 결산 및 전년도 세입·세출결산 추정액	1-1-3. 사회복지분야 예산의 비율
6. 지방채증권 및 차입금에 관한 발행, 상환실적 등	1-1-4.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의 비율
7. 공유재산의 전전년도 말 현재액과 전년도 말 추정액	1-1-5. 행정운영경비의 비율
8. 채무부담행위 지출액 또는 지출 추정액	1-1-6. 예비비 확보율
9. 계속비 지출액 및 지출 추정액	1-1-7.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중 인건비의 비율
10. 직종별 정원표 및 전년도 정원과의 대비표	1-2. 통합부채 (공단 및 출연기관 포함)
11. 중기지방재정계획서	1-3. 우발부채
12. 지방세 지출보고서	1-4.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의 비중
13. 성인지 예산서	1-5. 재정운용 관련 감사원 등의 감사결과
14. 그 밖에 예산의 내용을 명백히 함에 필요한 서류	1-6. 지방교부세 감액사항
	1-7.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내용
	1-8. 지방세 지출현황
	1-9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	1-9-1. 지방채 발행사업의 현황
	1-9-2. 민간투자사업의 현황 및 재정부담액 현황
	1-9-3. 지방공기업의 현황
	1-9-4.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현황
	2. 세입·세출예산 사업별 설명서
	3. 계속비사업에 대한 설명서, 지출상황 및 전망
	4. 채무부담행위에 대한 설명서, 지출 상황 및 전망
	5. 지방세 지출보고서
	6. 지역통합재정통계 보고서 (공단,출연기관 포함)
	7. 성인지 예산서
	8. 성과계획서
	9. 예산정원표 및 편성기준 단가
	10. 명시이월 명세서
	11. 중기지방재정계획서
	12. 공유재산 관련 서류
	13. 회계와 기금간의 이전 관련 서류
	14.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
	15. 전전년도 결산 및 전년도 세입세출결산 추정액
	16. 지방채증권 및 차입금에 관한 발행, 상환실적 등
	17. 지방채증권 및 차입금에 관한 연차별 상환계획
	18. 지방세 지출보고서
	19. 지방재정법 제39조에 따른 예산편성과정에
	참여한 주민 의견서 20. 그 밖에 예산의 내용을 명백히 함에 필요한 서류
	20. 스 낚시 에인의 대공들 공백이 함에 달표한 자유

### 2. 세입·세출예산의 과목구분 및 설정 기준 개정

# □ 【별표9】「세입예산 과목 구분과 설정」 개선

- 지방교부세법 개정에 따른 '소방안전교부세' 신설 반영
- 기타수입에 '지방자치단체 금고출연 등 협력사업비' 편성 근거 신설

# □ 【별표11】 「세출예산 사업별 분류」 기준 개선

# ① 출연금

- 지방재정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법령 등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출자·출연토록 규정
-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의 경우에 한하여 출연하되, 출연을 하려면 <u>미리</u> 해당 **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** ※ '미리' ⇒ 예산편성 이전에 의결을 받는 것이 원칙

#### ② 재무활동

- 공사·공단 전출금의 경우 공사·공단에 대행 또는 위탁하는 정책사업 임에도 불구하고 비사업인 재무활동으로 부류 됨
- 실제 성질에 맞게 재무활동 설정(내부거래)에서 제외
- ☞ (현행) 재무활동(비사업) ⇒ **(개정) 정책사업**

# □ 【별표12】 「세출예산 성질별 분류」 기준 개선

- ① 인건비 편성기준 제시
  - 기타 무기계약근로자

(현행) 지방자치단체가 연중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

- ⇒ (개정) 단순노무 관련 사무로서 250일이상 상시·지속적인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고용하는 근로자
- 기간제근로자등 보수

(신설) 상시·지속적인 업무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채용 및 예산편성 불가

#### ② 기타 예산편성 과목 설정에 있어 보완이 필요한 사항 반영

- 법령의 명시적 근거에 따라 교부하는 '운영비'와 차별화를 위해 '자율방범대원 운영비'를 **'자율방범대 실비지원'으로 과목명 변경**
- **사회보장제도 신설 · 변경 시** 「사회보장기본법」제26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토록 규정
  - 예) 공공산후조리원, 장수축하금, 보청기 지급 등
- '교육기관에 대한 보조' 과목에 '교육급여' 지원근거 신설
- **공기관 대행사업비(403-02)**에 자본적 지출과 경상적 지출이 혼재되어 있어, 이를 **경상적 경비와 자본적 경비로 이원화**
- '내부유보금'을 700(내부거래) 그룹에서 800(예비비)그룹으로 변경

# 기금 관련 주요 개선 사항

#### □ 지방기금법 개정 사항 반영

- 지방의회 승인없이 변경 범위 축소 : 정책사업  $50\% \Rightarrow 20\%$
- 결산서 제출시기 조정 : 6월 말 ⇒ 5. 10. (일반회계와 일치)
- 존속기한 : 5년 초과금지(연장시 지방재정계획심의회 심의 및 조례 개정) ※ 존속기한이 명시되지 아니한 기금은 2016. 12. 31.로 함
- 출납폐쇄 조정 : 익년 2. 28. ⇒ 당해연도 12. 31.
- 성인지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서 작성 : 2017회계연도 의무화('16년은 시범)
- 설치제한 :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이 곤란한 경우에만 설치

# □ 기금운용심의 투명성 및 효율성 강화

- 민간보조금 중 운영비는 법령 근거가 있는 경우만 교부토록 근거 신설 (일반회계와 동일)
  - ※ 위원회 기능은 '기금운용심의위원회'에서 수행
- 성과분석 명시적 주기 조정 : 3년 1회 ⇒ 매년
- 폐지기금 자금 활용 근거 명시 : 지방채 상환 등 우선 활용

# 주요 지방재정제도 설명

# 1. 의무지출 및 재량지출

#### □ 추진배경

-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
- 「예산안 첨부서류」에 '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의 비중'을 포함

# □ 지출의 개념

- (의무지출) 법령 등에 따라 지출과 지출규모가 결정되는 지출 및 이자 지출,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함
  - 교육비특별회계, 징수교부금, 조정교부금 등 법령에 따라 지출과 지출규모가 결정되는 경비
  - 국고보조사업 또는 시·도가 시·군 및 자치구에 보조금을 교부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
  - 기타 행정운영을 위한 기본경비, 의회관련 경비는 「지방재정법」에 따라 예산편성 운영기준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구속성이 강한 지출로 봄
- (재량지출) 의무지출 외의 모든 지출

#### □ 지방의회 제출방법

- (중기지방재정계획) 의무·재량 지출 규모 및 관리계획 등을 작성
  - 대상회계 : 일반회계 + 특별회계 + 기금 / (e-호조) 세부사업 단위로 작성
- (예산 첨부서류) 재정운용 상황개요서에 포함되는 의무지출 및 재량 지출 범위를 작성
  - 대상회계 : 일반회계 + 특별회계 / (e-호조) 세부사업 통계목 단위로 작성

# 2. 출납폐쇄기한 단축에 따른 예산집행 지침

# □ 달라진 점

- (공사·용역·물품계약 등의 경우) 종전 12. 31.까지 지출원인행위 후
  다음해 2.28.까지 지출 ⇒ '15년부터는 12. 31.까지 지출 완료
- (세 입) 출납원 수납분은 다음해 1. 20.일까지 금고 납입
- (일상경비) 다음해 1. 15.까지 잔액 반납
- (세입·세출의 출납사무의 완결) 다음해 2월 10일까지

# □ 주요 예상문제점 및 업무 처리요령

- 연내 완료가 불가능한 사업의 대량 이월 예상
  - □ '15년에 한해 연내 불가한 사업에 대해 이월제도를 적극 활용하되, 가급적 사고이월보다는 지방의회 승인을 받아 명시이월 조치

#### ○ 성질상 중단할 수 없는 사업의 계약체결

- ☞ 중단할 수 없는 사업의 경우, 예산 확정 전이라도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 확정 전의 계약방법을 적용
  - ※ 사업예시 : 청소, 시설관리용역, 전산장비 유지보수 용역 등
- 지방의회의 예산안 의결 전에 예산안의 범위내에서 사업계획을 확정하고, 입찰공고, 평가 등 사전절차를 확행
- 다만, 입찰 시 지방의회의 예산 심의결과에 따라 계약금액이 변경 될 수 있다는 내용을 공고문(수의계약 계약서 등)에 명시

#### ○ 12월분 카드대금 및 공공요금 납부

- 12월분 카드대금은 카드사에 결제예정 내역 확인서류를 요청하고, 이를 근거로 先 지출
- 12월분 공공요금 등 계약외의 경비 중 청구가 없거나, 기타의 사유로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는 "지난 회계연도 지출 "로 처리